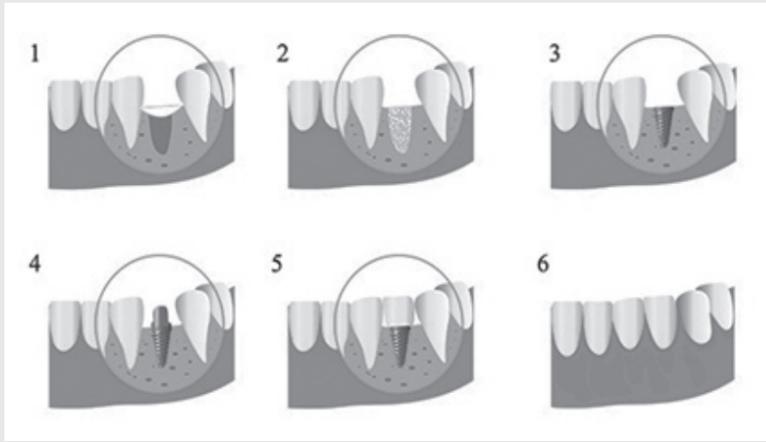


■ 치과 칼럼

### 잃어버린 구강 건강 임플란트로 해결



▲ 일반적인 임플란트 식립 순서. 임플란트는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하여 잇몸 뼈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음식 섭취, 발음의 어려움 등 생활 속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그 대안으로 브릿지와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브릿지는 치아가 빠진 부위의 양쪽 치아를 연결해 씌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전한 치아를 깎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치료가 바로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는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합니다. 잇몸 뼈에 심은 후, 주위의 뼈와 단단하게 붙으면 그 위에 치아 머리 형태의 보철물을 연결합니다. 브릿지와 달리 건전한 치아를 손상하지 않고 수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치아가 상실되면 잇몸 뼈가 점점 녹아 없어지는데,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잇몸 뼈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플란트는 연결 방식에 따라 나사 유지형과 시멘트 유지형으로 구분됩니다. 나사 유지형은 완전한 치아 형태의 보철물과 임플란트를 나사로 연결합니다. 대표적인 단점은 심미성입니다. 보철물의 씹는 면에 나사가 들어가는 구멍이 있기 때문

입니다. 시멘트 유지형은 일반적으로 치아를 씌우기 위해 삭제된 모양의 보철물과 임플란트를 나사로 연결합니다. 이어 보철물에 맞는 크라운을 치과용 시멘트로 붙여 치료합니다. 나사 유지형과 달리 구멍이 보이지 않아 심미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속에서 나사가 풀리거나 부러지면 크라운을 제거해야 하고, 크라운이 벗겨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현재 대중적인 치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부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시술 후 잇몸병이 발생하면 자연치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Micheal Han D.D.S  
Harbor Implant &  
Cosmetic Dentistry  
TEL (714) 773-9999  
goteamhcd@gmail.com



■ 법률 칼럼

### 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승인 (Labor Certification)

최근 새 정부의 이민 정책기조가 가족이민을 축소하고 메리트시스템(고학력자나 경력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을 기초로 한 취업이민을 확대할 것인 것이 유력하다는 언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추론해 보면 그 논리적인 귀결은 앞으로 안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취업이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취업이민 과정의 첫 단계로 흔히 Perm이라고 통칭되는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 허가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

잘 알려진 대로 취업이민은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단계와 실제 이민 신청의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미국 노동부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노동승인 신청을 심사합니다.

#### 1. 구인광고의 적절성

취업이민의 첫 과정은 취업이민 스폰서가 미국 연방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에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영주권 신청 허가를 요청하는 노동승인 단계입니다. 노동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고용주는 미국 내에서 고용주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에 미국 내 거주자(미국 내에서 노동이 가능한 시민권자, 영주권자나 노동허가증 소지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적당한 지원자를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취업이민 신청자를 고용주 회사에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미 노동부는 고용주가 미국 내 거주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로 일정 기간 동안 그 직종에 대한 구인 광고를 신문이나 기타 매체에 게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인 광고를 보고 고용주 회사로 오는 모든 이력서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현재 고용주 회사의 직종에 적합한 지원자가 없는지를 확인하여 합니다. 고용주는 이 모든 자료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노동승인 과정은 미 노동부가 고용주가 적절하게 필요한 직종에 대하여 광고를 했는지 그리고 그 광고를 보고 보내진 이력서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답변을 했는지를 점검합니다.

#### 2. 사업상의 필요(Business Necessity)

또 미 노동부는 노동승인 심사 과정에서 현재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종이 고용주 회사에 꼭 필요한 직종인가를 고려합니다. 만약 고용하려고 하는 직종이 고용주의 사업상 필요한 직종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미 노동부는 노동승인 신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규모가 아주 작은 회사인 경우 그 위한 회사만을 위한 전문 회계사(CPA)를 고용하겠다고 노동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미 노동부는 그 직종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노동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3. 직종의 한시성(finite)

노동부는 노동승인을 심사함에 있어서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종이 지속적(permanent)으로 필요한지 아니면 한시적(finite)으로만 필요한 직종인지를 고려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종이 고용주의 비즈니스에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노동부는 노동승인 신청을 거부할 것입니다.

취업이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위의 사항을 잘 고려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광고 요건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 주도록 신경쓰십시오. 그리고 취업이민 스폰서를 받을 직종을 정하실 때 고용주 회사가 그 직종을 꼭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 직종이 영구적 지속적으로 고용주 회사에 필요한지를 잘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노동승인의 심사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감사(Audit)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잘 준수해 강화된 심사와 감사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www.isemusa.com

#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